

평창군이장정수조제증개정조제안

의안번호 63

제출년월일 : 2003. 9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가. 도로개설, 아파트 신축 등 생활환경 변화(세대수 증가)에 따른 행정리의 분할이 요구되고 있어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일선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행정 리 조정(안 제2조)

○ 총 계 : 187개 리 ⇒ 188개리

- 송정 5리 신설 운영(기존 송정 3리에서 분할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 첨

나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군보게제(2003.07.19~08.07)

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명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표중 이장정수란 합계 "187"를 "188"로, 진부면 송정 "4"를 "5"로 하고, 동표 읍면란 중 진부면 "35"를 "36"으로 하고, 동표 분리구명란 중 "송정4리"다음에 "송정5리"를 추가하며, 동표 구역란 중 "중전 송정리 중 대2537, 대2538, 대2539"를 "송정리 중 대2537"로 중전 두일리 일원" 앞에 "송정리 중 대2538, 대2539"를 추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물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		
제2조(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)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.				제2조()					
읍면명	리 명	이장 정수	분리구명	구 역	읍면명	리 명	이장 정수	분리구명	구 역
합 계		187			합 계		188		
진부면 (35)	송정리	4	(생략) (생략) (생략) (생략) <신설>	(생략) (생략) 송정리중 대2537, 대2538, 대2539 (생략) <신설>	진부면 (36)	송정리	5	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 송정5리	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 송정리중 대2537 (현행과 같음) 중전 송전 3리중 대2538, 대2539
	두물리	2	(생략)	(생략)		두물리	2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
관계 법령 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

- 제4항 :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·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5항 : 동·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·리(이하 "행정동·리"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- 제6항 : 제5항의 행정동·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